

# 2025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

## ※ 공통사항

-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5.01.01. ~ 2025.12.31.

## ○ 주요 일정

2025.4분기	2026.1분기	2026.2분기	2027.1분기
1차 인센티브 접수·지급 포워더-③(인천시)	2차 인센티브 접수 선사-②~④, 화주-①~④, 포워더-①~②	2차 인센티브 지급 선사-①(신규항로)	3차 인센티브 접수·지급 선사-①(신규항로)

## ○ 예산 및 산정·지급 관련 사항

-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실적비례 인센티브의 경우, 각 기업의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예산 중 5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지급대상 그룹 내 우선 활용하며(지급대상 그룹 : ①선사, ②화주·포워더), 아래의 지급대상별 우선순위로 잔액을 활용함(단가제 항목限)
  - 선사 : ①특별항차 → ②수출입 물동량 증가형 → ③환적 순 단가(한도) 보장
  - 화주·포워더 : ①전략지역(미주·유럽) → ②냉동·냉장 인센티브 순 단가 보장

## ○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- 각 지급기준에서 100만원 미만 수령 업체(전략지역(미주·유럽) 및 냉동·냉장 제외)

## ○ 지급기준의 문구·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
## □ 선사 인센티브

- 검증 방법 : PORT-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

### · [기준1] 신규항로

구 분	주요 내용				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025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 신규항로 개설 선사 또는 미주·유럽 항로 유지 선사</li><li>· 1년 유지 필수,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.5만 TEU 이상 처리 필수</li></ul>				
산 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실적비례제)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선박 투입 기간 기준으로 분할 지급</li><li>·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</li></ul>				
	지역	미주·유럽 한도	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 신규 4억원 유지 3억원	동남아·극동러시아 신규항로 3억원	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 신규항로 2억원 신규항로 1억원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때 미주·유럽 신규·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고,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준 한도 비율(3:2:1)대로 재조정</li><li>-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은 항로에 한정하고, 조정의 경우 기존 국 외 기항지 중 50%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,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</li><li>- 지역 구분은 PORT-MIS 시스템에서 분류하는 지역코드에 따른다</li><li>- 주 0.5회 서비스의 경우, 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18~34항차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% 지급</li><li>- 단, 개시 첫해 일부 선사만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, 모든 공동운영 선사의 동의서(날인 포함), 사용인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받아 균등 배분하되, 향후 선박투입 변동 시 공동운영 선사간 조정한다.</li></ul>				

### · [기준2] 특별항차

구 분	주요 내용				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025년 '컨' 특별항차를 통해 인천항을 기항하는 선사</li></ul>				
산 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단가제) 물동량별 인센티브 한도(적/공/수출/수입/환적 모두 인정)</li></ul>				
	물동량(TEU)	500~999	1,000~1,999	2,000~2,999	3,000 이상
비 고	단가(백만원)	5	10	20	3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선사가 제출한 특별항차 실적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검증하며, 기타 특별항차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</li><li>- 동일 선박일 경우 연간 최대 1항차 인정</li></ul>				

· [기준3] 수출입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
	항목① - 규모형			항목② - 증가형		
대 상	- '25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 규모 1~5위 선사 (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- 2025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선사 (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			
산 식	- 단가제	- (단가제)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3,000원				
비 고	- 적/공/수출/수입/화적 '컨'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종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- 연중 기항 개시(재개) 시 연간 필수 처리 실적 기준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. (예시) '25.10.31일자 기항 선사의 경우, 필수처리실적 기준을 4,932 TEU(20,000 TEU × 90일 /365일)로 연중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함					

· [기준4] 환적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5년 인천항 '컨' 환적(적/공) 물동량 1,000TEU 이상 처리 선사
산 식	- (단가제) 환적 물동량 X TEU당 5,000원

□ 화주 인센티브

- 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· [기준1] 수출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5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화주 (연간 1천톤 이상 처리 필수)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
비 고	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

· [기준2] 전략지역(미주·유럽지역)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- 2025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·유럽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컨'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더 종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수출 물동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동량 X TEU당 2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· [기준3] 전략지역(NEXT CHINA)

구 分	주요 내용
대 상	- 2025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인도·인도네시아·중동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 컨' 10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20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※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더 종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X '25년 수출입 물동량 실적 ÷ 대상업체 수출입 물동량 실적 합계
비 고	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· [기준4] 냉동·냉장(Reefer)

구 分	주요 내용
대 상	- 2025년 인천항을 통해 냉동·냉장 '적' 컨' 1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- 2025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·유럽으로부터 냉동·냉장 '적' 컨' 1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 (CONSIGNEE) ※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,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·포워더 종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
산 식	- (단가제) 대상 물동량 X TEU당 50,000원
비 고	-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- 증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(단,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,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## □ 포워더 인센티브

◎ 검증 방법 : 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 
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### · [기준1] 수출 물동량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	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		
대 상	- 2025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더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	- 2025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포워더																
산 식	- 단기제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1위</th><th>2위</th><th>3위</th><th>4위</th><th>5위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단가(백만원)</td><td>50</td><td>40</td><td>30</td><td>20</td><td>10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(백만원)	50	40	30	20	10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				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				
단가(백만원)	50	40	30	20	10													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-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종복 수령 불가 -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						

### · [기준2] 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
구 分	주요 내용					
대 상	- 2025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					
산 식	- 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					
비 고	- 환적을 통한 복합운송 실적만 인정하며, 수출입 환적 물동량이 다를 경우 더 작은 물동량을 실적으로 인정 - 수출 또는 수입 환적 중 한 가지만 처리했을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50% 인정 - 국제물류주선업 자격을 보유하고(고유한 운송주선업부호 보유), 해당 업체가 실제 포워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함					

### · [기준3] 인천시 포워더

구 分	주요 내용					
대 상	-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5년 1~3분기 중 인천항 처리 '적'컨'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(G.W.T)이 200톤 이상인 업체					
산 식	- (균등배분제) 예산 ÷ 대상 업체 수					
비 고	- 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					